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80
----------	---------

제출연월일 : 2019년 11월 일
제출자 : 강서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 다양한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위원회 구성 필요하다.
나.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당연직 위원 배제

3. 주요내용

- 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확대 개편(안 제12조제1항)
- 현행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 개편
- 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 배제(안 제12조제3항)
- 당연직 위원(각 국장, 보건소장) 관련 규정을 삭제
- 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 변경(안 제12조제3항제2호)
- 추천주체: 비영리 민간단체 →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
- 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지역·성별 등 고려(안 제12조제4항, 신설)
- 위원회는 지역·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
 -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마. 주민참여예산제 교육대상 범위 확대(안 제18조)

- 현행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일반 주민까지 교육대상 범위 확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9. 10. 2.~10. 22.) 결과: 의견 없음
- 규제 사전심사 결과: 해당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를 “강서구”로, “구 예산”을 “예산”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구”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30명”을 “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을 “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자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을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예산부서의 공무원”을 “주민참여 예산 담당 과장”으로 한다.

2.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8조의 제목 “(위원에 대한 교육)”을 “(주민참여예산 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를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u></p>	<p><u>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u>강서구(이하 "구"라 한다)</u>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u>구 예산</u>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강서구</u>----- ----- <u>예산</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p> <p>1. <u>구</u>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p> <p>2. 3. (생략)</p>	<p>제2조(정의) ----- ----- --.</p> <p>1. <u>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u>----- 2. 3. (현행과 같음)</p>
<p>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u>30명</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위원회 구성) ① ----- ----- ----- <u>50명</u> ----- ----- -----.</p> <p>② (현행과 같음)</p>

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되며, 위촉 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다만, 구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는 단체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재정, 예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추천한 사람

<신설>

- ④ (생략)
- ⑤ 위원회 운영 지원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부서의 공무원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

③ 위원-----

-----.

1. (현행과 같음)
2.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자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

-- 사람

④ 위원회는 지역별, 성별 비율을 감안하여 구성하고,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⑥ -----

---- 주민참여예산 담당 과장-----
--.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등) ① -----

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18조(위원회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원회가 구성될 때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 및 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 한 차례만 ----- . <단서 삭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주민참여예산 교육) ----- 위원과 주민을 대상으로 -----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 시 예상되는 비용 없음

4. 작성자: 행정관리국 협치분권과 과장 이미순

(담당 : 행정9급 최동호 / ☎ 2600-6144)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사유

- 다양한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위원회 구성 필요
-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당연직 위원 배제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3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 배제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주민자치위원회(또는 주민자치회)로 변경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시 지역·성별 등 고려
- 주민참여예산제 교육대상 범위를 일반 주민으로 확대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주민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주민 참여예산위원회 구성원을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19 - 42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협치분권과	통보(조치)일		2019. 10. 2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44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협치분권과	
	담당자명	최동호	전화번호 02-2600-6144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19년 10월 7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협치분권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관련 규정을 다양한 주민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는 구조로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 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강서구생활복지국장 (담당자/연락번호 : 최은영/02-2600-6762) 협치분권과장 귀하			



지방재정법

[시행 2019. 4. 17] [법률 제15803호, 2018. 10. 1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5. 29.>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세입"(歲入)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말한다.
3. "세출"(歲出)이란 한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을 말한다.
4. "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한다.
5. "채무"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 8. 4.]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3., 2018. 3. 27.>

②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주민참여예산기구(이하 "주민참여예산기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신설 2018. 3. 27.>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2018. 3. 27.>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3., 2017. 7. 26., 2018. 3. 27.>

⑤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18. 3. 27.>

[전문개정 2011. 8. 4.]

[제목개정 2018. 3. 27.]

부칙 <제15803호, 2018. 10. 1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40호, 2018. 12. 31,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재정협력과) 044-205-3733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44-205-37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재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절차)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2.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3. 사업공모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시 반영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절차·운영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2944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7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고 또는 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